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0시 52분



목차

목차	2
이륜차신고	3
대상	3
신고기간	3
신고장소	3
구비서류	3
과태료	3

자동차등록	건설기계등록	이륜차신고	과태료	취득 등록면허세
검사/의무보험	자동차등록현황	민원서식	자주하는 질문	오시는 길

- 사용신고
- 신고사항변경
- 사용폐지신고
- 신고필증/번호판/봉인재교부
- 용어해설

대상

- 등록된 이륜자동차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.

신고기간

구분	기간
폐차, 용도폐지, 도난, 기타	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

신고장소
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

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	
공통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▪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▪ 신분증 (위임시 : 위임장, 위임받는자 신분증) ▪ 이륜자동차 번호판(멸실,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외) 	
추가 서류	폐차	▪ 폐차증명서
	도난	▪ 도난확인서 (관할 경찰서장 발행)
	기타사유	▪ 기타사유증빙서류

과태료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구분	기간	금액
사용폐지신고	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	2만원
	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상 180일 이내	6만원
	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이상	10만원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